

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(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)에 따라 「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」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.

2022년 6월 3일

서울특별시

1. 용역명 :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

2. 용역내용

-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와 신규 공동프로그램 개발

3. 사유

본 용역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(현재 1억원)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,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,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3 제1항의 예외 사유(학술, 연구, 조사, 검사, 평가,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)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

4. 문의사항

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(☎ 02-2133-9263, 오상배 주무관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